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교육사 등급간 역할 구분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하위 등급은 대국민 환경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입문형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등급별 평가고도화 등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교육사 등급체계를 간소화하고자 함.

또한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업무 위탁 사항에 추가하고자 함.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사 등급체계 개편(안 별표 1)

환경교육사의 등급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개편함.

나. 업무의 위탁사항 추가(안 제21조제1항)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업무 위탁 사항에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운영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강화 대상 없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환경교육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을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는”을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으로,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도환경교육계획””을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도”를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시·도환경교육계획”을 각각 “지역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 시·도환경교육계획”을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4항 중 “시·도환경교육계획”을 각각 “지역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

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운영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자격기준
1. 환경교육사 1급	가.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환경교육사 2급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교육사 1급과 2급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교육사 1급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교육사 3급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교육사 2급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 <u>국가환경교육계획</u> ”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u>국가계획</u>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 <u>시·도환경교육계획</u>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 ----- ----- --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 <u>대도시</u> ”라 한다)의 장은 --- 한다)와 대도시의 <u>지역환경교육계획</u> (이하 “ <u>지역계획</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시·도</u> 의 특성과 여건을 반	2. <u>지역</u> -----

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u>시·도환경교육계획</u>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4. <u>시·도환경교육계획</u>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② <u>시·도지사는 시·도환경교육계획</u>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u>시·도지사는</u>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u>시·도환경교육계획</u>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시·도환경교육계획</u>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한다. 1. (생략) <u><신설></u>	----- 3. <u>지역계획</u>----- ----- ----- 4. <u>지역계획</u>----- ----- ② <u>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u>----- -----. ③ <u>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u>----- <u>지역계획</u> ----- -----. ④ ----- ----- <u>지역계획</u>----- ----- -----.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 ----- <u>또는</u>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교</u>
--	---

2. · 3. (생 략) ② (생 략)	<u>육사의 보수교육 운영</u>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연 락 처	(044) 201 - 6535